

벽으로 보강토 옹벽처럼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구성되며, 보강토 옹벽보다 안전하고, 지진하중, 긴급피해복구 및 하천에 시공하기 위해 개발 된 조립식 옹벽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대안소일텍(김인철) ②(주)포스코건설(이영훈)  
 ③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김대철)  
 ④ 대우조선해양건설(주)(한글랜상, 서복남)  
 ⑤양우건설(주)(고삼상)

나. 전화번호 : ① 02-387-4207 ② 032-748-1840 ③ 02-2008-9114 ④ 02-750-8311  
 ⑤ 02-2679-5200

2. 명칭 : 보강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BSCW 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의 보강격벽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의 강성을 증대시키고, 굴착층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활동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연약지반에서 흙막이 벽체가 자립하도록 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 별도의 지보재(버팀보, 지반앵

커, 레이커 등)가 불필요하여 굴착공정의 시공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의 보강격벽으로 연결하고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흙막이 벽체가 자립하도록 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흙막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교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신규·변경)
18	나라(독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종로24길 12 204호	문제익	2009. 5.22. (2020. 1.7)	독도홍보를 위한 독도의 날 기념행사, 홍보연주회, 국제 글짓기 대회 개최 및 독도 표기 오류 시정 활동 등	02-457-5901	해양 영토과	변경

●병무청공고제2020-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병 무 청 장